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지 방 공 무 원 수 당 등 에 관 한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, 핵심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인사교류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의 가산금을 인상하고 인사교류 직위 중 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추가 가산금을 지급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9호가목의 지급대상란 3) 중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”를 “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 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2조의2”로 하고,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(나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(나) 가산금

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 의장을 달리하여 임용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임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,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,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회 상호 간, 지방자치단체와 교육·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교류임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월 600,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지급대상 3)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사교류 직위의

중요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류 직위에 임용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추가가산하여 지급한다.

지급대상	월 지급 상한액
1급·2급	600,000원
3급	400,000원
4급	300,000원
5급 이하	150,000원

(비고)

1. 지급대상란 가목의 해당자가 지급대상란 나목 및 별표 14의 비고 제2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란을 적용한다.
2. 위 계급에는 이에 상당하는 연구관·연구사, 지도관·지도사 및 장학관·장학사를 포함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9 제9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53